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4년 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대구 지역 내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

1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요

입주지원 및 육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콘텐츠IP 개발 및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성장 잠재력 있는 초기 콘텐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조성된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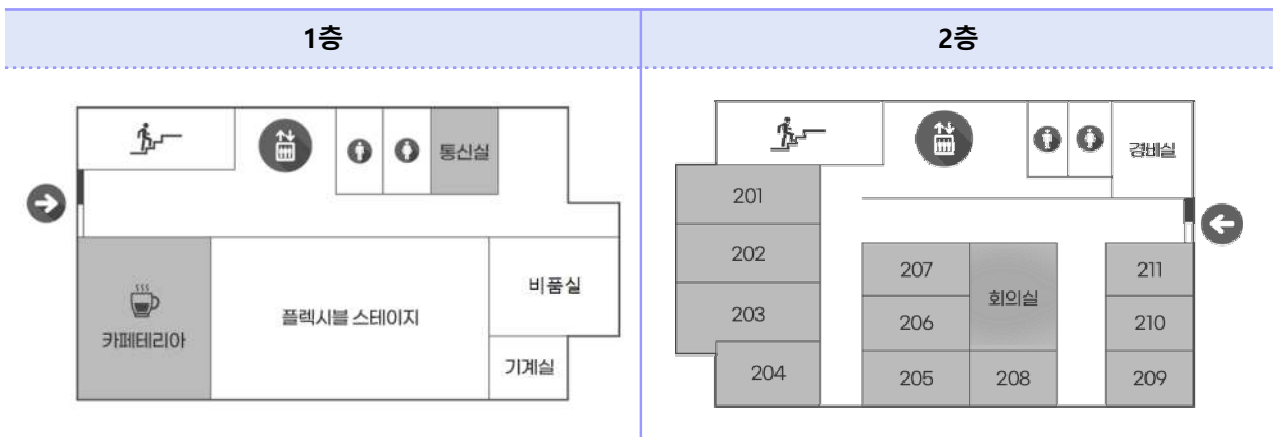
- **(위치)** 대구시 동구 장등로 76 (신천동 84-1)
- **(대지)** 1,095㎡ (331평), **(연면적)** 2,427㎡ (734평)
- **(구성)** 입주공간 23개실 및 회의실, 휴게실, 세미나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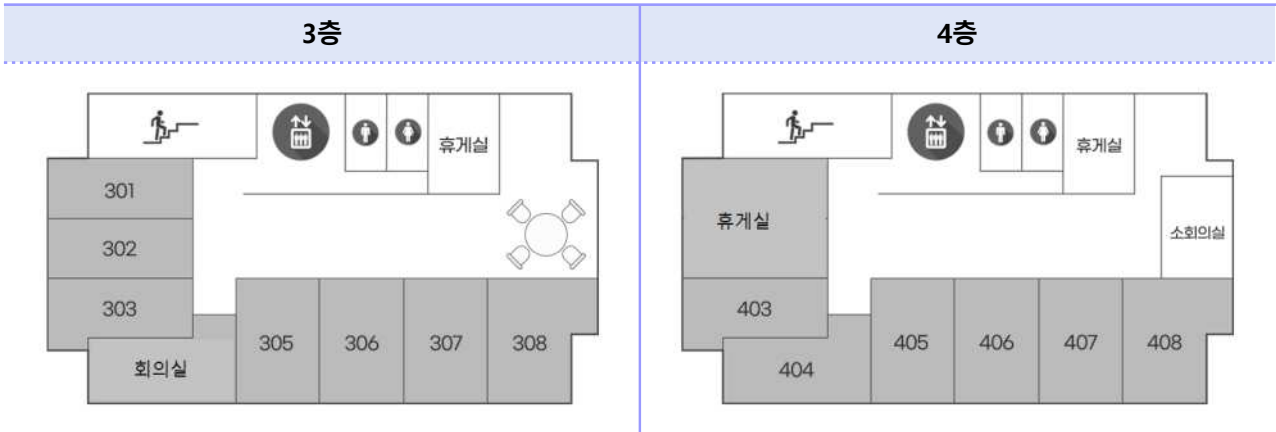


○ 센터 시설현황

구분	시설현황	
	내부	외부
5층	센터 운영사무실	-
4층	입주실(6실), 소회의실(1실), 휴게실(2실), 다용도실(1실)	
3층	입주실(7실), 회의실(1실), 다용도실(1실)	
2층	입주실(10실), 회의실(2실), 관리실(1실)	주차(16면), 장애인주차(1면)
1층	플렉시블스테이지(30명 수용), 카페테리아	

□ 층별 구성





※ 위 평면도 일러스트(그림)는 입주 희망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2 모집개요

- 공고명 :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4년 2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 입주기간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초 2년, 연장 2년까지 가능(총 4년)
※ 단, 205~211호는 최초 1년 계약 후, 연장 1년까지 가능(총 2년)
- 모집규모 : 총 2개실

구분	호실	전용면적		계약면적		월 임·관리비 (원) 부가세포함	최대입주 가능기간
		m ²	3.3m ²	m ²	3.3m ²		
2층	209	16.00	4.84	28.44	8.60	60,000	2년
4층	407	30.06	9.09	53.43	16.16	242,459	4년

※ 기업당 신청가능 호실은 최대 2개 (입주 이후, 공실 발생시 추가 호실 신청도 가능)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콘텐츠 분야 기업(법인 및 개인)

※ 콘텐츠 분야 기업 : 만화(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미디어),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융복합콘텐츠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체 콘텐츠 제작·개발·IP보유 기업을 우선 순위로 선정
- 영화, 출판, 게임, 디자인, 공연, 문화예술, 공예, 문화재 등 제외

- 입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사 소재지를 대구 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기업 또는 대표자), 신용불량자(대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 제조업 등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자
 - 우리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및 기술료, 임대료 미납 기업
 - 센터 기 입주기업 중 2개 입주실 사용기업
 - 기타 입주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
- ※ 입주 후, 상기 제외 대상에 해당함이 판명되는 기업은 즉시 입주를 취소하고 퇴거 조치함

3 지원내용

- 입주공간
 - 임·관리비: 계약면적 (1㎡)당 4,550원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과금 : 전기, 상하수도 요금 호실 별, 실비 부과
 - 보증금 : 월 임·관리비(부가세 포함)의 12개월분
* 보증보험이행(지급)증권으로 대체

□ 지원상세

구분	내용
입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독립 사무 공간 제공 ○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등), 냉난방 설비, 인터넷 제공
인프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2~4층 층별 회의공간 운영 및 무상 대관 ○ 플렉시블스튜디오: 콘텐츠 관련 행사시 지원되는 다목적홀 무상대관 ○ 편의시설: 카페테리아(전자레인지, 냉장고, 정수기 등), 다용도실, 휴게실 등 ○ 기타: 컬러복합기 무상 이용
관리 지원	경비, 미화 등 시설 안전 관리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관련 지원 ○ (네트워킹) 입주기업 오픈톡 운영 <p>※ 연도별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은 안내 예정</p>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 5. 30.(목) / 15:00
- 신청방법 :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cec.dip.or.kr/>) 알림 참고
홈페이지→입주모집 공고문 클릭→신청서 다운로드&작성 →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 후, 접수 확인 필수
- 접수처 : 콘텐츠IP육성팀 seol@dip.or.kr 053)655-1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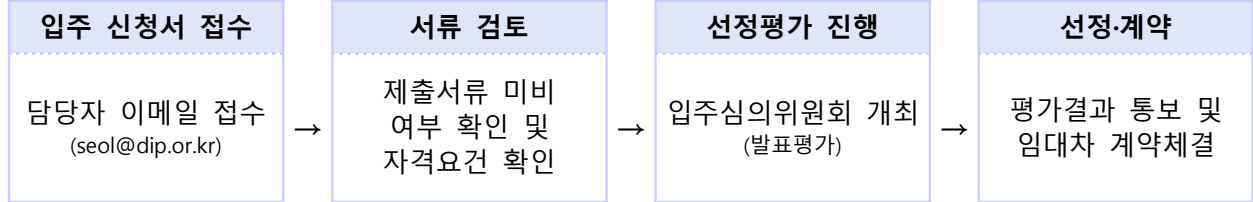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필수여부
1	입주신청서(양식1)	- 한글파일 : 작성본 - pdf파일 : 인감 날인 스캔본 2가지 파일형식 모두 제출	필수
2	사업수행계획서(양식2)		필수
3	입주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양식3)	서명한 스캔본	필수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4)	참여 인력 전원 서명한 스캔본	필수
5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6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일: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7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시
8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2021년~2023년 결산 기준 재무제표 * 창업 1년 미만 업체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며, 현재까지의 재무현황 자료 제출 * 내용 없을시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필수
9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일: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10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1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일: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12	발표자료 (발표시간 8-10분 내외)	파일 형식: ppt 또는 pdf	필수
별첨	지적재산권 및 기타 실적 증빙 - 특허출원/등록, 상표권, 수상 등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증명서, 투자유치 내역	평가시 우대될 수 있는 콘텐츠사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해당시
별첨	기타 회사소개자료(IR 자료 등)	-	해당시

- ※ 각 신청서류는 목록 번호에 맞춰 '번호_서류명_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기업명_zip'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제출 누락 서류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서류 유효기간 만료, 인감 및 서명누락)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추진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 : 사업계획 P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각 10분 내외)
 - 접수현황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변동 가능, 발표시간 개별 메일로 안내
 - 대표자 참석이 기본이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평가일 전까지 메일 제출(하단 별첨 양식 참조)
 - 위임자는 해당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임직원만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하여 참석
- 평가위원 : 지역 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로 5인 구성(외부 4인)
- 평가기준 : 선정평가 평가표에 의한 각 심사위원 산술평균 점수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 후보기업의 경우 차기 입주신청기간 전까지 공실 발생시 입주 가능
- 입주실 배정 : 입주 희망호실 우선 배정하되, 호실 중복 신청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실 배정

□ 선정평가 평가표

- **신규** 신청기업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계획 (40점)	사업적합성 (10점)	· 기업의 사업계획이 센터가 지향하는 목적 및 방향에 적합한가? · 매출구조 및 사업계획이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실현가능성 (15점)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연차별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차별성 및 경쟁력(15점)	· 보유 콘텐츠에 대한 차별성 및 시장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목표 시장 및 고객 분석 등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기업역량 (30점)	전문성 (15점)	· 콘텐츠 제작, 사업화 등을 위한 전문성(제작능력, 경험, 기술, 아이디어, 마케팅,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참여인력 (15점)	· 대표자의 경영능력, 수행경험, 사업의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기대효과 (30점)	성장가능성 (15점)	· 주력 콘텐츠의 사업화 및 수익성,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 투자, 고용창출, 해외진출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입주연계성 (15점)	· 센터(프로그램, 입주기업 등)와 협력을 위한 참여 의지와 계획이 있는가? · 센터 입주공간 등 필요성 및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

□ 입주시기

-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일부터 15일 이내에 입주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입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함

□ 입주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 이후 1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 가능(총 4년)
- 205~211호의 · 경우 최초 1년 계약 후, 연장 1년까지 가능(총 2년)

□ 입주조건

- 입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 본사 소재지를 대구콘텐츠기업지원 센터로 이전 등록 후, 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신청서에 기재한 입주 예정인원의 상주 근무 필수
- 출석률 확인을 위한 기업 임직원 지문등록 및 출근시 지문인식 협조
 - ※ 입주기업 임직원 1명 이상의 출석률이 있을시 출석으로 인정되며, 지문인식기 미태깁시 출석 인정 불가
- 입주 계약 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에 협조해야 함

□ (참고) 연장평가지 정량지표

매출성장(10)		투자유치(5)		고용창출(5)	
증가율(%)	배점	건수	배점	증가율(%)	배점
50이상	5	2건	5	50이상~	5
30 ~ 50미만	3	1건	3	25~50미만	3
~ 30미만	1	0건	1	~25미만	1

- 매출성장 산출식 : (전년도 매출 - 입주년도 매출) / 입주년도 매출 x 100
- 고용창출 산출식 : (연장신청서 기재 인원 - 입주신청서 기재 인원) / 입주신청서 기재 인원 x 100

입주실 출석(6) ※입주기업 근로자 중 1명이상 출근시 인정		임·관리비 납부(2)		제규정 준수(2)	
월평균 출석일	배점	누적 2개월 미납횟수	배점	위반건수	배점
15일 이상~	6	0회	2	0건	2
10 ~ 15일 미만	3	1회	1	1건	1
~ 10일 미만	0	2회 이상	0	2건 이상	0

- ※ 입주기업이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입주공간 활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3회 이상 월 평균 출석일수가 5일 이하일 경우 입주를 취소하고 퇴거 조치할 수 있음

1.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주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입주심사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 하며, 탈락기업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4.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5.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6. 건물외벽에 입주기관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7. 입주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5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센터 운영 예정자와 협의 및 허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센터 운영 예정자가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9. 공부 정리 시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증감 발생 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음
10.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11. 입주기업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12. 입주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입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실태조사에 반영될 수 있음
13. 입주기업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본사 사무실을 대구콘텐츠기업지원 센터로 이전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이전 필수)
14.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15.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16. 사진, 영상, 성과 등의 사업 결과물을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사업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17.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및 이후 3년간 성과조사 참여 및 성과제출의 의무가 있음
1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19.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